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(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:제3자 뇌물 취득)·범인 도피·뇌물 공여

·제3자 뇌물 교부

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용일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석호철 외 10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벌금 200,000,000원에,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9,000,000원에, 피고인 3(대법 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), 피고인 4(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)를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5(대법원 판결의 1심 공동피고인)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, 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2는 200,000원을, 피고인 1은 50,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, 4에 대하여는 각 4년간, 피고인 5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 3, 4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350,000,000원을, 피고인 1로부터 34,0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